##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2022. 12. 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한다) 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의거, 한국인터넷진홍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 3.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5. "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6.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진단·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7.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8. "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다.
- 9.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진흥원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

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진흥원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 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④ 진흥원은 해당 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 ⑤ 진흥원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주체) ①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수집하는 개별 업무부서이며, 동일한 공공데이터를 여러 기관 또는 부서에서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② 진흥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품질관리·이용 활성화 업무 등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수임·수탁기관이 수행하되,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이 공공데이터에 관해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 제2장 관리체계

-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과 역할) ① 진흥원은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이하"제공책임관"이라한다.)은 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데이터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공공데이터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4.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추진
  - 5.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 총괄 및 지원
  - 6. 공공데이터 기반행정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7. 공공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의 지정과 역할) ① 제공책임관은 업무부서 데이터의 제

- 공 및 관리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제5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 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취득·관리하는 부서(이하 "업무부서"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문서의 제출과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성·수집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기반 마련 등
- 2.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 3. 등록·제공 단계 :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 신청 처리 등
- 4. 제공 사후관리 단계 :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 5. 품질관리 및 제공표준: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제공표준 데이터셋 관리 등
- 6. 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 제7조(데이터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정책수립 및 데이터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있다.
  - 1.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운영하는 부서
  - 2. 데이터를 생성·수집·개방·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 3. 데이터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 공무원
  - 4. 그 밖의 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

##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 제8조(공공데이터 수집·취득) ① 진홍원은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때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 권리정보가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제공대상 데이터 중 일부의 저작권이 외부인 및 타기관 등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제공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 등록·관리) ① 진흥원은 제공대상인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개방 데이터 목록 외에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신청받은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진흥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 제공방법, 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 및 활용지원센터에 처리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 ⑤ 진흥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 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처리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경우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비공개 대상정보와 제3자의 권리가 포함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원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진흥원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표준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공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준수
  - 2. 정보화사업 발주 시 DB 관련 요구사항 정의
  - 3. 데이터 산출물 관리

- 4.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제11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1. 용어정의서 : 개체, 속성 등 데이터 요소의 명명에 사용될 용어 정의
  - 2. 도메인정의서 : 번호, 여부, 날짜/시간, 명칭 등 데이터를 분류하는 단위 정의
  - 3. 코드정의서 : 부여할 코드와 설명, 타입, 길이 등 명시
  - 4.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논리데이터모델을 도식화하여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물리 데이터모델을 도식화하여 테이블, 컬럼, 관계, 식별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
  - 6.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데이터베이스 담당부서, DBMS 이름 및 버전 정보 등 명시
  - 7. 테이블정의서 : 테이블의 영문명, 한글명, 설명 등 정의
  - 8. 컬럼정의서 : 컬럼의 영문명, 한글명, 설명 등 정의
  - 9. 연계데이터 목록 : 연계데이터의 항목 및 제공과 활용기관에 대한 정의
  - 10. 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데이터 값 오류
  - 2. 데이터 구조의 정합성
  - 3. 데이터 표준 준수
  - 4.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진단·평가를 수행하고 품질 개선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부서별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와 협조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 에 따른 품질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에 제시된 절차와 규칙을 준용한다.
  - ⑤ 진홍원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하여 [별표1호] 범정부데이터품질진단 기준의 1-7, 12 항목을 적용한 컬럼진단 규칙, 8-11 항목을 적용한 업무진단규칙을 도출하여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개

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12. 2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범정부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순번	진단기준	진단내용	비고(예시)
1	날짜 도메인	날짜 데이터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식이 표준을 위배 한 데이터 오류 측정	2월의 일자(DD) 값이 30일로 저장, 4, 6, 9, 11월 일자(DD) 값이 31일로 저장된 오류
2	번호 도메인	번호생성 규칙을 위배한 경우 오 류 측정	신고인부호(5)+연도(2)+일련번호(6)+ 신고서식부호(1)
3	여부 도메인	컬럼의 저장된 값이 유효값(2개의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 오 류 측정	보유여부의 컬럼에는 {'Y', 'N'}, {'O', 'X'} 2개의 값이 존재함
4	코드 도메인	표준으로 정의한 코드값으로 일 관되게 적용하고 있지 못한 코드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코드 테이블에 정의하지 않은 코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5	금액 도메인	금액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 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거나, 유효하 지 않은 범위의 금액 데이터
6	수량 도메인	수량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수량의 단위가 적혀 있거나, 유효하 지 않은 범위의 수량 데이터
7	율 도메인	율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 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율의 단위가 적혀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범위의 율 데이터
8	시간순서 일관성	시간순서 관계를 갖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시작일시(2000.01.01)가 종료일시 (1999.12.31)보다 빠른 데이터 점검
9	선후관계 정확성	선후관계를 가지는 컬럼 간의 데 이터 오류 측정	특정 사건 발생 후 이후 사건이 발 생할 수 있음
10	컬럼 간 논리 관계 일관성	컬럼 간 논리적 일관성 오류를 측정	가입여부가 'Y'일 경우, 가입일시는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함
11	계산식	계산값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 는지 측정	구매건수x구매금액은 구매합계와 일 치해야함
12	참조관계	참조하는 컬럼과 참조되는 컬럼 사 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회원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회원이 교육 신청할 수 없음